

#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[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]

#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(이하 "금융회사"라 합니다)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(이하 "채무자"라 합니다)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2조 (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- "할부금융"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.
- "할부금융자금"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.
- "할부금"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.

## 제3조 (약정서 필수기재사항)

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.

- 매도인·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
-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
- 이자율, 연체이자율,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
- 불건기록, 할부금융자금
- 월 할부금의 금액·지급횟수 및 시기
-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

## 제4조 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

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·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.

-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,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,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
- 할부금의 변제방법

## 제5조 (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)

채무자는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 제6조 (소유권행사의 제한)

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원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, 대여 등이 의무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## 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

-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황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,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지를 기산하여 납입합니다.
-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칙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한다.

- 대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

지연배상금률 = 약정이율 + 3%

- 대부 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+3%를 적용한다.

가. 「상법」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

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

\* 거치기간은 정상기간 약정이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④ 지연배상금률은 법정최고금리(2.4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- 할부금을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,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 제8조 (기한이익의 상실)

-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채무자는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, 대여 등 의무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,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## 제9조 (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

-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종료에 잉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(당월 할부금, 연체금 등)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.
-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 제 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-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실제 대출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## 제10조 (향변권)

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-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·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
-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
-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향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.
-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가 향변 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.
-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향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## 제11조 (비용의 부담)

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
-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·확인서 등의 소요비용
-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
-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%씩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깊기로 합니다.

## 제12조 (담보의 제공)

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

## 제13조 (유효기간)

이 약정의 효력을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,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.

## 제14조 (채권의 양도)

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## 제15조 (결제방법)

-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
-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.
-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,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(연체료 포함)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,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## 제16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

## 특약사항

### 자동이체 약관

-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(이하 "고객"이라 합니다)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푸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 보유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합니다) 계좌(이하 "지정계좌"라 합니다.)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.
-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,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.
-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이제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
-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,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납부자의 사정으로 결제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(해지)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.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